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8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 
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【의원발의】  
검토보고서



2022. 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2. 2. 10.

운영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- 발의자: 박정환 의원 외 8명(박정환, 김화덕, 김태형, 이성순, 배지훈, 이신자, 김귀화, 조복희, 홍복조)
- 발의일자: 2022. 1. 26.
- 회부일자: 2022. 1. 27.
- 검토기간: 2022. 1. 28. ~ 2. 4.

### 2. 폐지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### 4. 참고사항

- 폐지조례안: 붙임 참조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舊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2. 1. 26. ~ 2022. 2. 7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폐지 조례안은 기존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하여 추천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나,
- 본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양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】

### □ 舊 지방자치법

**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**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1. 별정직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**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장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추천대상 등)** ①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의 추천대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(이하 “의회사무국”이라 한다) 사무직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.

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**제3조(추천요청)**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진규모 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자료의 요구 및 제출)**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)**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·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
3. 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

**제6조(서면 통보 등)** ①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들어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했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